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수정사항 안내

1. 사회서비스자원과-632(2010.2.1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기 배포한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내용 중 편집상 착오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p.83쪽 내용추가

* '09년 지침부터 반영된 사항이 편집상 착오로 누락(추가사항은 파란색 표기)

< 변경 내용 : p.83쪽>

1)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지회 포함)근무 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에 한함)

붙임 :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최종본(전문). 끝.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무관	고은정	행정사무관	조승아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전결 03/18 박난숙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1097 (2010. 03. 18.) 접수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10층 사회서비스자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8288 전송 02-2023-8282 / kasu33@korea.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